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9
----------	------

제출일자 : 2026. 1. 5.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이유

현행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의 휴관일 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수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달성화석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휴관일 변경(안 제5조)
- 나. 관람료 감면 규정 변경(안 제8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34조 삭제)
- 라.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규정 변경(안 제36조)
- 마. 관람료 구분 기준 변경(별표 1)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6. 1. 30. ~ 2026. 2. 19.)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 중 일반 성인 및 일반 어린이·청소년의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세 이상 64세 이하
7세 이상 18세 이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개관 및 휴관)</p> <p>① (생략)</p> <p>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 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3. 「<u>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u>」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다만, 그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경우 개관)</p> <p style="padding-left: 20px;">4. (생략)</p> <p>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2. ~ 18.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34조(시설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p> <p>① (생략)</p> <p>② <u>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u></p>	<p>제5조(개관 및 휴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 style="padding-left: 20px;">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lt;삭제&gt;</u></p> <p style="padding-left: 20px;">4.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2. ~ 18.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19. <u>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u></p> <p style="padding-left: 20px;">20. ----- -----</p> <p>제34조(시설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군수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u></p>

<p><u>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그 배상·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1. ~ 4. (생략)</p> <p>제36조(시설사용료)</p> <p>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u>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36조(시설사용료)</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군수는 박물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	---

## 현 행

[별표 1]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일 반	성인	3,000원	2,000원	19세 ~ 64세
	어린이 · 청소년	2,000원	1,000원	초·중·고등생 6세 ~ 18세
달 성 군 민	성 인	1,500원	1,000원	증명서류 제시
	어린이 · 청소년	1,000원	500원	

(생 략)

## 개 정 안

[별표 1]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일 반	성인	3,000원	2,000원	19세 이상 64세 이하
	어린이 · 청소년	2,000원	1,000원	7세 이상 18세 이하
달 성 군 민	성 인	1,500원	1,000원	증명서류 제시
	어린이 · 청소년	1,000원	500원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국가배상법」

-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달성화석박물관 휴관일 규정을 개정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수정하여 이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2025년도 달성화석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 수입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개정에 따른 수입의 변화는 연평균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관광과 관광개발2팀장	성명(연락처)	윤수인(668-2791)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